#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4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한병도·신영대·이해식

장철민 · 진선미 · 윤준병

강유정 • 이원택 • 이소영

강선우 의원 (10인)

## 제안이유

생활소비재산업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산 업임.

최근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심미성·상징성·자기만 족과 같은 주관적 욕구 충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신흥국의 성장과 한류 확산 등의 영향으로 해외시장 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생활소비재산업이 새로운 IT기술, 컨텐츠, 첨단소재, 디자인 등과 융합되면서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생활소비재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가격과 수익이 점차 낮아지는 등 산업의 수명주기 상 성숙기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개도국의 중저가품과 대비할 때는 가격경쟁력에서, 선진국의 고가

품과 대비할 때는 품질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도약 혹은 쇠퇴라는 갈림길에 선 국내 생활소비재산업을 창의적이고 신선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시점임. 이에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생활소비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고 실 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생활소비재를 지정할 수 있고 우수생활

소비재의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그리고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첨단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법률 제 호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흥을 도 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소비재"라 함은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가구, 가방, 주얼리, 문구, 소형가전, 시계, 신발, 악기, 안경, 완구, 운동레저용품, 위생용품, 의류, 주방용품
    - 나. 그 밖에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제품 및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생활소비재산업"이란 생활소비재를 기획·연구·개발·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3. "생활소비재기업"이란 생활소비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4.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란 국가가 생활소비재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한 공간 또는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소비 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소비재산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

-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생활소비재산업경쟁력강화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 2. 생활소비재산업의 디자인, 브랜드, 연구개발, 인력 등 부문별 경쟁력 강화 시책에 관한 사항
- 3.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 5. 생활소비재산업의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6. 관련 산업과의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7.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법ㆍ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8.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생활소비재산업경 쟁력강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①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
  - 4.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제도의 도입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생활소비재산업의 혁신기반 조성 등

제7조(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

- 쳐 생활소비재산업 혁신클러스터(이하 "혁신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요청하려는 혁신클러스터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혁신클러스터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클러스터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혁신클러스터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클러스터에 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ㆍ기관들의 역량 강화
  - 2. 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ㆍ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
  - 3. 혁신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
  - 4. 혁신클러스터 지정 지역 외의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
  - 5. 물류센터 등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6. 그 밖에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클러스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통계작성·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 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산업통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생활소비재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 작성과 제2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장, 생활소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통계작성·실태조사와 생활소비재산업통계정보시스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생활소비재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제10조(우수생활소비재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품질 및 디자인 등이 우수하거나 성장잠재력이 큰 생활소비재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품 또는 서비스에는 우수생활소비 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생활소비재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9항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제품인 경우 제조자를, 서비스인 경우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 지정 업무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 지원사업을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⑦ 우수생활소비재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기준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 ⑨ 그 밖에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기준·절차·표시와 수수료 징수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우수생활소비재에 대한 지원 및 환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생활소비재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
  - 2. 기획 · 디자인 · 제조 ·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
  - 3. 기술지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 4.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 지원
  - 5. 그 밖에 우수생활소비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10조제 4항제1호에 따라 우수생활소비재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 원의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지원과 제2항의 지원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

비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등 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
-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
- 3. 퇴직근로자 등 생활소비재 관련 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 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
- 4.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 인력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이로 정한다.
- 제13조(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3.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그 밖에 생활소비재산업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생활소비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취소,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 비재기업의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활소비재 디자인 및 브랜드 관련 연구개발·정보수집·제공 및 상담
  - 2. 생활소비재기업의 디자인 및 브랜드 관련 교육ㆍ컨설팅

- 3. 생활소비재 전문디자이너의 육성 및 지원
- ② 그 밖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 비재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 2.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및 해외전시 회 등의 개최·참가
  - 3. 생활소비재산업 수출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
  - 4. 생활소비재산업 수출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②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생활소비재기업 및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활소비재기업과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생활소비재기업 · 산업의 첨단화 및 자동화
  - 2.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환경친화적 기업·산업으로의 전환
  - 3.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산업과의 융합 촉진 및 활성화
  - 4. 동반성장을 위한 생활소비재기업 간 네트워크의 강화
  - 5. 생활소비재기업·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② 그 밖에 생활소비재기업과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 제1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소비재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6장 벌칙

-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생활소비재

의 지정을 받은 자

- 2.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생활소비재의 표시를 사용한 자
-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지정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